



# 美 콜로라도 주, 「인공지능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AI법제도센터 채은선 수석 연구원

## ■ 개요

- 콜로라도 주(州)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concerning consumer protections in interaction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SB205)\*을 제정 ('24.5.17. 제정 및 효력 발생, '26.2.1.부터 본격 시행\*\*')<sup>1)</sup>

\* 콜로라도 주 법규정집 제6편 제1조 제17부 추가

\* 법 전체에 대한 '시행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개발자 및 배포자의 주요 의무에 대해 'On and after February 1, 2026'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행은 2026년 2월 1일부터인 것으로 파악. 다만 모든 규정이 아니라 특정 규정에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본 일자를 해당 내용에서 표시

## ■ 주요 내용

### ① 주요 개념의 정의

- (알고리즘 차별<sup>Algorithm Discrimination</sup>) 인공지능 사용으로 인해, 나이(실제 나이뿐 아니라 인식되는 나이 포함), 피부색, 장애, 민족, 유전정보, 영어 유창성 수준, 국적, 인종, 종교, 생식건강(生殖健康), 성별, 재향군인 또는 그 밖의 주·연방 법에 따라 보호되는 부류에 속하는 개인·집단에 불리한 '영향' 또는 '불법적 차별 대우'가 야기되는 모든 조건, 사적 클럽에서의 행위 등은 불포함\*

#### 〈\*‘알고리즘 차별’에 불포함되는 경우〉

- ① 오로지 <sup>㉠</sup>주·연방 법 준수를 보장하고, 차별 파악·완화·예방을 위해 개발자 또는 배포자가 자체 테스트 또는 <sup>㉡</sup>다양성을 증진하거나 역사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신청자, 고객 또는 참가자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목적으로만 개발자 또는 배포자가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공, 특허(license) 또는 사용
- ② 사실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적 클럽 또는 기타 시설의 작위·부작위(대리 행위 포함)

- (인공지능 시스템<sup>AI system</sup>)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목적을 위해, 물리적 또는 가상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콘텐츠, 결정, 예측 또는 권고 등의 결과물 생성 방법을 입력(input)으로부터 추론하는 모든 기계 기반 시스템

1) [https://leg.colorado.gov/sites/default/files/2024a\\_205\\_signed.pdf](https://leg.colorado.gov/sites/default/files/2024a_205_signed.pdf)

-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sup>high-risk AI system</sup>)** 배포된 후 ‘중대한 결정’을 하거나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요인을 만드는 인공지능 시스템, 다만 협소한 범위의 절차적 업무만 수행하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비디오 게임 및 사이버 보안 기술 등은 불포함\*
  - **(중대한 결정<sup>consequential decision</sup>)** 교육 등록 및 교육 기회, 고용 또는 고용 기회, 금융·대출 서비스, ‘필수 정부서비스’(essential government service), 건강관리, 주택, 보험 및 법률서비스의 제공 여부 또는 조건·비용에 ‘실질적 법적 효과 또는 이와 유사하게 중요한 효과’를 갖는 결정
  - **(상당한 요인<sup>substantial factor</sup>)** 인공지능 시스템이 산출한 것으로서, ‘중대한 결정’을 지원하고, ‘중대한 결정’의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요인

####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불포함되는 경우〉

- ① 협소한 범위의 절차적 업무만 수행하거나, 의사결정의 규칙 또는 이러한 규칙의 일탈을 탐지하되 의사결정을 대체할 의도는 아닌 인공지능 시스템
- ②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 다만 배포된 후 중대한 결정의 ‘상당한 요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당한 요인’을 만들어 내지 않는 경우에 한함

|                                                                                           |                                     |                         |
|-------------------------------------------------------------------------------------------|-------------------------------------|-------------------------|
| (a)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사기방지기술                                                                | (b) 맬웨어(malware) 방지                 | (c) 바이러스 방지             |
| (d) 인공지능 기반 비디오 게임                                                                        | (e) 계산기                             | (f) 사이버 보안              |
| (g) 데이터베이스                                                                                | (h) 데이터저장소                          | (i) 방화벽                 |
| (j) 인터넷 도메인 등록                                                                            | (k) 웹사이트 로딩(website loading)        | (l) 네트워킹                |
| (m) 스팸 및 로보콜 필터링                                                                          | (n) 철자법 검사                          | (o) 스프레드시트(spreadsheet) |
| (p) 웹 캐싱(web caching)                                                                     | (q) 웹 호스팅(web hosting)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 |                         |
| (r) 정보 제공, 소개 또는 권고, 질문에 답변할 목적으로 자연어로 소비자와 소통하며, 차별적이거나 해로운 콘텐츠 생성을 금지하는 이용정책의 적용을 받은 기술 |                                     |                         |

- **(배포자<sup>deployer</sup>)** 고위험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자로서 콜로라도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개발자<sup>developer</sup>)**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의도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상당히 수정하는 자로서 콜로라도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의도적인 상당한 수정<sup>intentional and substantial modification</sup>)**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알고리즘 차별에 관한 모든 새로운 위험 발생하도록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의적으로 변경, 다만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의도적인 상당한 수정’에 불포함
  - **(불포함 요건)** ①제공·판매·리스·특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배포자가 이용하거나 배포된 이후,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이 계속 학습되고, ②계속된 학습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에 변화 발생하며, ③이러한 변화가 최초 영향평가 시 예견되고, ④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술문서에 포함된 경우

## ②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자의 의무

- (알고리즘 차별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조치)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의도되거나 계약에 따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합리적으로 예견되거나 알려진 알고리즘 차별의 위험’”(이하, ‘알고리즘 차별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 이용
- (위험·데이터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자는 해당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배포자 또는 그 밖의 개발자에게 다음과 같은 설명 또는 문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함(26. 2. 1.~)
  - (a)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관하여 알려진 해롭거나 부적절한 이용과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이용에 관한 설명
  - (b) ①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학습 데이터의 유형에 관한 ‘높은 수준의 요약서’(high-level summaries), ②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관하여 알려지거나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한계, ③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목적 및 ④의도된 이익·사용, 그리고 ⑤배포자가 이 법상 요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기타 모든 정보를 나타낸 문서
  - (c) ①제공·판매·리스 등을 하기 전에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성능 및 알고리즘 차별을 평가한 방법, ②데이터 거버넌스 조치와 데이터 출처의 적절성, ③편향 가능성 및 적절한 감경을 조사하는 데 사용된 조치, ④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물, 그리고 ⑤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알고리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자가 취한 조치를 기술한 문서
  - (d) 배포자가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성능을 모니터하고 결과물을 이해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
- (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정보 등 제공) 배포자 또는 다른 개발자에게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공·판매·리스·특허·이용 하게 하는 개발자는 이들 배포자 등이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델 카드, 데이터 세트 카드 또는 기타 영향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서정보 제공(26. 2. 1.~)
  - 개발자가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배포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Unaffiliated Entity’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자의 의무’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문서 마련 불필요
- (시스템 유형 및 알고리즘 차별성 관리 방법 등 제공) 개발자 웹사이트 또는 ‘공공 이용 사례 저장소’(public use case inventory)<sup>2)</sup>에서 명확하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유형\* 및 알고리즘 차별성 관리 방법\*\* 등을 요약한 진술서 제공(26. 2. 1.~)

2) ‘public use case inventory’는 연방기관 대상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https://ai.gov/ai-use-cases/>. ‘연방정부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용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 13960’(Executive Order 13960 Promoting the Use of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ederal Government)에 따라 연방기관은 ‘등급이 분류되지 않았고 민감하지 않은 인공지능 사용 사례’를 관련 법·정책에 따라 가능한 한도 내에서 공개

- \* 개발자가 개발했거나 의도적으로 상당히 수정하였던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유형과 배포자 또는 기타 개발자가 현재 이용가능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유형
- \*\* 개발자가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 또는 의도적인 상당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알고리즘 차별 또는 이미 알려진 차별을 다루는 방법

- 상기 진술서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바에 따라 해당 진술서를 개정하고,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상당히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을 수정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진술서를 최신 내용으로 유지

- **(차별 발생 보고서 제공)** 알고리즘 차별의 발견\* 또는 그러한 차별이 발생했다는 보고서를 배포자로부터 제공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단, 90일 내), ‘알고리즘 차별 위험’을 법무부장관과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모든 알려진(알게 된) 배포자 또는 개발자에게 알려야 함

- \* 개발자의 지속적인 테스트 및 분석을 통해, 개발자의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이 배포되었거나 알고리즘 차별을 야기하였다는 것 또는 알고리즘 차별이 야기되었을 합리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

- \*\* 개발자가 배포자로부터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이 배포되었고 알고리즘 차별을 야기했다는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공받음

- **(예외)** ‘영업비밀에 해당되거나 주·연방 법에 따라 제공·공개가 금지된 정보, 개발자에게 보안 위험을 야기하는 정보’의 공개는 제외(단, ‘소비자 보호 조치’에는 해당되지 않음)

### ③ 배포자의 의무

- **(알고리즘 차별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조치)** ‘알고리즘 차별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것(‘26. 2. 1.~)

- 2026년 2월 1일부터 위험관리체계 및 프로그램 수립, 알고리즘 차별에 관하여 알려진 또는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위험을 파악, 문서화 및 완화할 수 있는 원칙, 절차 및 인력을 구체화,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규칙적·체계적으로 검토되고 최신으로 관리

- **(위험관리체계 및 프로그램 수립)** 다음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다양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포괄

-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의 ‘인공지능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의 최신 버전에 규정된 지침 및 표준, 국제표준기의 ISO/IEC 42001 표준, 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인정된 인공지능 시스템 위험관리체계
- 주(州)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배포자의 규모 및 복잡성, 의도된 목적 등 배포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성격·범위, 배포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하여 처리된 데이터 민감도·규모’

- **(영향평가 수행)**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배포자 또는 배포자와 계약한 제3자’는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이후 매년 영향평가 수행,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도적인 상당한 수정을 가한 경우 이러한 수정한 날 이후 90일 이내에 영향평가 수행(‘26. 2. 1.~)

- 영향평가에는 알고리즘 차별 위험 야기 가능성 분석 및 완화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하고\*, 배포자가 이용할 수 있거나 알려진 합리적인 수준으로 포함

#### 〈\*영향평가에 포함할 사항〉

- (a)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의도된 이용 사례, 배포된 맥락(context), 이익에 관한 설명
- (b)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이 '알고리즘 차별 위험'을 야기하는 지 분석, 알고리즘 차별의 성격, 위험 완화를 위해 취한 조치
- (c)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이 입력값으로 처리하는 데이터의 분류 및 결과물에 관한 설명
- (d) 배포자가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을 필요에 맞추기 위해(customize) 데이터 사용 시, 사용한 데이터 분류에 관한 개요
- (e)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성능 및 한계 평가에 사용되는 모든 지표
- (f)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관한 모든 투명성 조치에 관한 설명
- (g) 배포자가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배포로 인한 쟁점을 다루기 위해 수립한 감독, 이용, 학습 절차 등 배포 이후 모니터링, 이용자 보호에 관한 설명
- (f) (의도적인 상당한 수정을 한 이후 수행하는 영향평가)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자가 의도한 이용에 부합하는지 또는 의도한 이용과 다른 정도(수준)에 관한 설명('26.2.1.~)

- 유사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세트에 대해 한 번의 영향평가 수행(이들 시스템 개별적으로 영향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이들 전체에 대해 한 번의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됨)
  - 다른 법령에 따라 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 이러한 영향평가가 이 법에 따른 영향평가의 범위와 효과가 합리적으로 유사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영향평가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
  -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이 최종 배포된 이후 최근 3년 동안의 영향평가 기록을 보관
- **(배포된 시스템 매년 검토)** 매년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이 알고리즘 차별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배포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검토('26.2.1.~)
- **(고지 및 정보 제공)** 소비자에 관하여 중대한 결정을 하거나 이러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상당한 요인을 만드는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을 배포하기 전 배포자는 소비자에 대한 고지 등을 이행 하고, 이러한 중대한 결정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관련 정보 제공('26. 2. 1.~)

#### 〈고지 및 정보 제공 관련 이행 사항〉

##### ▶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배포 전 배포자의 이행 사항

- (a)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을 배포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고지,
- (a)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목적 및 본 시스템에 관한 설명, 중대한 결정의 성격, 배포자의 연락처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
- (c) 법적 효과 또는 이와 유사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프로파일링 목적으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에게 거부권 제공

##### ▶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제공해야 하는 정보

- (a)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이 중대한 결정에 기여한 수준, 본 시스템이 처리한 데이터 유형과 출처 등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된 주된 이유에 관한 설명
- (b) 그러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처리한 모든 부정확한 개인정보를 정정할 기회
- (c)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중대한 결정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기회, 이러한 이익 제기 시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사람의 검토를 허용

- 고지, 관련 내용, 연락처 등 제공 시 ①소비자에게 직접, ②쉬운 언어로, ③배포자가 영업 과정에서 계약, 판매 고지, 정보 제공 시 사용하는 모든 언어로, ④장애를 가진 소비자도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제공
- 직접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받을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방법으로 제공

○ **(웹사이트에 정보 게시)** 배포자는 명확하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모두를 요약하여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정기적으로 내용을 최신으로 관리('26. 2. 1.~)

- (a) 배포자가 현재 배포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유형
- (b)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각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 차별 위험' 관리 방법
- (c) 배포자가 수집 또는 이용한 정보의 성격, 출처 및 범위에 관한 상세 내용

○ **(예외)**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배포자에 대해 '위험관리체계 및 프로그램 수립', '영향평가' 및 '웹사이트에 정보 게시' 의무 적용하지 않음

- (a) 전일 근로자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을 학습시키는 데 배포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음
- (b)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이 배포자에게 알린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고 배포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제외한 출처부터 수집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계속 학습됨
- (c)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자가 완료하여 배포자에게 제공한 영향평가와 영향평가에 포함되는 정보와 상당히 유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영향평가를 소비자에게 제공

○ **(배포 후 차별 보고)** 배포자가 2026년 2월 1일부터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을 배포하였고, 이후 알고리즘 차별을 발견한 경우, 해당 배포자는 지체 없이(단 발견 이후 90일 이내)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보고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정함)

- 고지 또는 정보제공 시 주연방 법에 따라 보호받은 정보 또는 영업비밀은 포함되지 않으며(제공하지 않는 이유 알릴 것), 배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제공
- 법무부 장관은 배포자 및 배포자와 계약한 제3자에게 위험관리정책, 수행한 영향평가, '최종 배포 이후 최근 3년간 수행한 영향평가에 관한 모든 기록'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 이후 90일 이내에 요청받은 정보 제공(고지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정함)('26. 2. 1.~)

④ **(공통의무: 인공지능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임을 공개)** 인공지능 시스템 배포자 또는 개발자는 소비자가 상호작용하는 것이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함, 다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상황인 경우는 제외('26. 2. 1.~)

④ (예외) 다음 중소기업 및 특정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는 법 적용 배제

○ (중소기업)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을 학습시키지 않는 경우

○ (특정 인공지능 기술) 사이버 보안, 신원확인, 일상적인 기업 운영업무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술

⑤ 집행

○ (항변) 개발자 및 배포자 모두, 법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관한 위험관리체계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이행 및 유지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sup>3)</sup> 가능

○ (규칙 마련) 주(州) 법무부장관이 위반행위를 불공정·기만적 거래 행위로 분류하고 소비자에 대한 고지의 방식과 내용 등 법 이행·집행에 필요한 규칙 마련

〈개발자 및 배포자의 의무〉

| 개발자                                                                                                                                                                                                                                                                                                                                                 | 배포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고리즘 차별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조치</li> <li>-</li> <li>· (배포자, 그밖의 개발자에게) 위험데이터 등에 관한 정보 제공</li> <li>· (배포자, 그밖의 개발자에게) 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정보 등 제공</li> <li>-</li> <li>· (웹사이트 등에) 시스템 유형 및 알고리즘 차별성 관리 방법 등 제공</li> <li>· (배포자, 그밖의 개발자, 법무부장관에게) 차별 발생에 관한 보고서 제공</li> <li>· 소비자가 인공지능 시스템과 상호작용임을 알 수 있게 할 것</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고리즘 차별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조치</li> <li>· 위험관리체계 및 프로그램 수립</li> <li>-</li> <li>· 영향평가 수행</li> <li>· 배포된 시스템 매년 검토</li> <li>· (소비자에게) 고지 및 정보 제공</li> <li>· 웹사이트에 정보 게시</li> <li>· (법무부장관에게) 배포 후 (발견된) 차별 보고</li> <li>· 소비자가 인공지능 시스템과 상호작용임을 알 수 있게 할 것</li> </ul> |

3) 원고 또는 검사의 기소에 관한 사항을 인정하지만, 죄를 면제시키거나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 등)를 피고가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소송법상의 방어·항변. 적극적 항변의 경우 원고(검사)가 아닌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미국식 개념 정의는 다음 참조: [https://www.law.cornell.edu/wex/affirmative\\_defense](https://www.law.cornell.edu/wex/affirmative_defense)

## ■ 시사점

- 콜로라도 주 주지사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에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입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 공식 성명에서 향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고, 연방 차원에서의 AI 규제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본 입법이 기술혁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 표명<sup>4)</sup>
- 미국은 연방보다는 주 차원에서 인공지능 시스템 규제가 보다 적극적인 가운데,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념을 도입하고 해당 시스템의 개발자·배포자의 의무를 규정한 인공지능에 관한 일반법은 콜로라도 주가 미국 최초로 입법
  - 유타 주 및 테네시 주 또한 인공지능에 관한 입법을 하였으나, 유타 주는 생성형 인공지능에<sup>5)</sup>, 테네시 주<sup>6)</sup>는 얼굴, 초상, 등의 이용에 대한 개인의 권리 보호에 주안점을 두어 특정 인공지능 시스템 또는 이용 행위를 규제
  -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인공지능 시스템에 관한 일반법을 입법 추진 중이며('24.5.21. 상원 채택, 현재 하원 심의 중), 코네티컷 주는 콜로라도 주와 유사하게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을 규제하는 법을 입법 추진 중('24.4.24. 상원 채택, 현재 하원 심의 중)
    - \* 하원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 관련 산업계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프론티어 모델 규제 중심 입장은 유지하되, 인공지능 연구소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의 간여 수준을 다소 낮추며, 관련 신규 기관을 신설하지 않는 대신 프론티어모델위원회는 존치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수정법안을 채택하고,('24.8.15.) 최종 심의 대기 중
- 「인공지능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은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념과 더불어 이에 해당하지 않은 예를 상세히 제시하고, 위험을 야기 하도록 미세조정(fine-tuning)하는 등 인공지능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자도 개발자에 포함
  - 다만, 계속된 학습으로 인한 것이며, 기술문서에 포함되고 영향평가에서 예견했던 변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배포된 이후에도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특성을 고려
-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준 및 불포함 사례, 개발자와 배포자의 의무, 영향평가 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 등을 구체화 하였다는 점에서, 입법 선례로서 EU AI법과 더불어 법 규정 및 그 이행 상황이 국내 인공지능법 입법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

4) <https://www.lawfaremedia.org/article/california-s-proposed-sb-1047-would-be-a-major-step-forward-for-ai-safety-but-there-s-still-room-for-improvement>

5) 채은선, “美 유타주, 「인공지능 수정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디지털 법제 Brief 2024-5, NIA.

6) 채은선, “美 테네시 주, 「초상·음성·이미지 보호 보장법」(ELVIS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디지털 법제 Brief 2024-9, NIA.

## 디지털 법제 Brief

기    획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정책본부  
          AI법제도센터  
작    성 : 채은선 수석 연구원  
발 행 일 : 2024년 8월

1.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이라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